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1-74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1. 9. .

발 의 자 : 채우진의의원 외 1명

1. 수정이유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감액조정률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하여 감액률을 구체화하여 반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안 제30조 중 “전부 감액 조정 할 수 있다”를 “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”로 변경함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 중 “전부 감액 조정 할 수 있다”를 “감액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”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 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 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증 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<u>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부 감액 조정 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감액 조정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.</u></p>

[참고자료]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제10조(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·변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,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·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출 절차는 「지방자치법」 제46조에 따른다.

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,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「지방자치법」 제3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·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

제7조(공유재산의 관리계획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(이하 “관리계획”이라 한다)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[매입, 기부채납, 무상 양수, 환지(換地), 무상 귀속, 교환, 건물의 신축·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,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 및 처분[매각, 양여, 교환, 무상 귀속, 건물의 멸실,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]으로 한다.

1.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

가. 취득의 경우: 20억원(시·군·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)

나. 처분의 경우: 10억원(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)

 [처음으로](#)